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9
------	------

2025. 6. 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강동길 의원(찬성자 29명)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6.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강동길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 신기술'이 삭제되고 '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에서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신기술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III. 검토의견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규정된 ‘방재신기술’이란 용어가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발의됨.

2. 개정안 검토

- 동 조례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에 제정됨.
- 제정 당시 동 조례 제2조(정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그 중 하나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포함하였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
 -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란 기술기반의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4. "디지털 전환"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 이후 국회에서는 국내 재난안전 기술 분야의 기업자생력 강화와 4차산업 및 IoT 융합 신기술 개발 등의 지원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제정(2022.1월)하면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방재신기술’은 삭제됨.
- 이에 따라 동 조례의 제2조제2호다목도 새롭게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를 인용한 ‘재난안전신기술¹⁾’로 개정되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이를 현행화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임.
- 다만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조례가 현실에 맞게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재난안전신기술’이란 기존 ‘방재신기술’이 다루던 자연재해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전반의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임.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환,
임규호, 임종국, 최기찬,
최민규, 홍국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삭제되면서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에서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신기술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다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난안전신
기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기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혁신기술”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2.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삭제되면서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